

환경리스크와 보험

김 동 일
(위험관리 정보센터 과장)

1. 머리말

가. 환경 리스크란 무엇인가

기업에 있어서 '환경 리스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① 법률상의 리스크 ② 환경법령의 강화에 따르는 리스크 ③ 기업 이미지 저하 등의 리스크를 떠올릴 수 있다.

우선 '법률상의 리스크'라고 하면, 이것은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벌칙, 조업정지 처분, 오염의 정화 책임, 불법 행위에 따른 제3자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다.

다음에 '환경법령의 강화에 따르는 리스크'라는 것은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설비 투자 등을 할 경우에 따른 재산성의 악화, 공장 폐쇄를 포함한 당해 사업에서의 철수, 신규 진출의 곤란성 등이다.

끝으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의 리스크'로는 환경법 위반이나 환경오염 사고가 매스컴에 오르거나, 소비자 단체로부터 환경 파괴 제품을 생산한다는 낙인이 찍히는 등의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 리스크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나, 이들 리스크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리스크는 일부에 한한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

지만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불법 행위에 의한 제3자 손해 배상책임이나 오염의 정화 정책에 의한 리스크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리스크에 관하여 구미 각국과 일본에서의, 책임 소재와 보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나.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이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누출 또는 유출의 결과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배상책임

이나 오염된 토지의 정화책임이다. 전자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이고, 후자는 행정상의 책임이다.

우선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의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배상책임 법리에 따라 책임 당사자의 부담이 달라진다. 즉, 엄격책임(무과실 책임)의 경우 피해자는 단지 오염손해와 책임 당사자의 활동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면 되는 반면, 과실책임인 경우에는 책임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염된 토지를 소유한 경우 토지의 정화 책임에 대하여서는 미국의 소위 슈퍼펀드법과 같이 법률로 정화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정화 책임은 지지 않는다.

2. 환경배상 책임보험

우선 제3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해설하면, 기업이 사업 활동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부담하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일반적인 보험으로 일반배상 책임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Sudden and accidental)'로 기인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의 환경 오염 사고라도 우연 혹은 돌발적인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이 보험으로 담보된다.

미국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일반배상 책임보험으로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고 있으나 재판소에 따라서는 '서서히 발생한 오염'이라도 '계약자가 예상치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것(Neither expected nor intended)'이라면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의 의도에 반하여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판단을 내린 케이스도 나와 있다.

현재, 미국의 보험회사는 환경오염 책임을 일반배상 책임보험으로는 절대 면책으로 하여 일체 담보하지 않는다.

환경 배상책임 리스크는 특수한

리스크로서, 환경오염 사고에 관하여 서서히(gradual) 오염이 진행된 케이스인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케이스 인가를 반드시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이외에서도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일체 면책이고, 별도의 환경배상 책임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다. 주요 국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EU(유럽연합)

1976년 이탈리아의 세베소 사건에서의 다이옥신 오염, 1986년 산도스사 화재 사고에 의한 라인강 오염, 1993년 1월 브레이어호 좌초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이 유럽 국민들에게 오염 정화나 환경 복구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구주위원회에서는 환경 손해에 관한 책임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

1993년 3월에 발표된 환경백서(Green Paper)가 그것으로서 민사배상 책임에 근거한 책임 당사자간의 환경손해 복구 코스트의 분배 문제와, 민사배상 책임원리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환경손해 복구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백서 가운데, 기본 원리로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서술되어 있고,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엄격책임의 선택적 도입, 책임당사자 간의 연대책임에 대하여도 언급되어 있다.

백서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폭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반드시 일정한 결론을 내려야 할 바는 아니지만 환경오염 책임에 관한 생각의 방법을 정리하는데 참고가 된다.

나. 네델란드

네델란드에서는 1973년까지 일반배상 책임보험상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그후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서히 발생한 오염'은 면책이었다. 또, 보험금의 지불 대상이 되는 것은 제3자의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한하고, 이익상실은 대상 외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화비용은 담보하지 않는다.

1984년 1월, 환경배상 책임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공동인수 제도(MAS POOL)가 설립되어, 1993년 9월말 현재, 54개 사가 참가하고 있다. MAS POOL 환경배상 책임보험의 커버 대상이 되는 것은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서서히 발생한 오염'도 포함된다. 또,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제3자의 신체장애, 재물손해 및 이익상실이다. 자신 소유의 토지 정화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대상밖이지만 다른 곳에 오염이 미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1992년 9월 말 현재, MAS POOL의 인수 능력은 1사고당 연간 1천 7백만 길더(약 70억원)이다.

다. 프랑스

네델란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일반배상 책임보험에 관하여 통일된 약관은 없지만 담보되는 환경오염은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환경오염에 한하고, 서서히 오염이 진행·확대된 경우는 면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대상이 되는 손해도 제3자의 신체장해, 재물손해에 그치고 이익상실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화학·석유정제·폐기물처리 등 1976년 7월 10일 기본법으로 정한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설령,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도 담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대상은 한정되었다.

1994년 1월부터 재보험자가 일반배상 책임보험으로 담보하는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환경오염의 한도액을 1천만 프랑(약 14억원)으로 한 바와 같이, 장래에는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일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의 환경배상 책임보험에는 1989년 ASSURPOL 이라고 하는 재보험 풀이 설립되어 현재 60개사 이상이 가맹하고 있다.

ASSURPOL이 담보하는 것은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 외에 서서히 발생한 오염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손해도 제3자의 신체장해, 재물손해외에 이익상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일정한도 내에서 자기소유지의 정화비용도 대상이 된다.

ASSURPOL의 인수능력은 1992년 9월말 현재 1사고당 연간 1억 9천 2백만 프랑(약 2백 80억원)이다.

라.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의 환경오염 사고에 의한 배상은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일체 면책으로 되어 있고, 전용의 환경배상 책임보험으로

로 담보되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재보험 풀로 인수되고 있다.

이 풀은 1979년에 설립된 Pool Inquinamento로서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보험회사인 Generali를 필두로 현재 84개사가 가맹하고 있다.

Pool Inquinamento의 기본 커버는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이고, 서서히 발생한 오염에 의한 배상책임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제3자의 신체장해, 재물손해 및 이익상실 외에 일정 한도내에서 자기소유지의 정화비용도 대상이 된다. 1992년 9월말 현재 Pool Inquinamento의 인수능력은 1사고당 연간 5백억리라(약 2백50억원)이다.

마. 독일

종래 독일에서는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질오염에 대하여서는 연방수질관리법에 의하여, 엄격책임 혹은 연방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기 및 토양오염에 대하여서는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1986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일어난 화학회사 산도스사의 대규모 화재에 의한 라인강의 오염사고로 피해자구제 관점에서 대기나 토양에 대하여서도 엄격책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져, 독일의 통일 직후인 1991년 1월 1일에 환경배상 책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한 공정을 갖고 있는 시설이지만, 적용되는 책임원리는 엄격책임으로

로, 그 적용범위는 물·대기·토양 전체에 미치는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이하 사업자)는 비록 법령에 따라 조업을 하였어도 조업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엄격책임이라고 하여도 통상 피해자는 그 손해와 조업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무를 지지만 이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정상적인 조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원인추정 조항'이 들어 있어, 사업자 측에 엄격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그 한도액은 1사고당 1억 6천만 마르크(약 8백억원)이다.

이 법률에서는 손해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다.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환경배상 책임보험이 임의인 점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 강제인 점이 특징이어서 그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바. 미국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제3자의 배상 책임보험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재판의 결과 실제로는 서서히 발생한 오염이라도 배상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오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의 보험회사는 1985년 이후, 환경오염은 일체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대면책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한 배

상책임에 대하여서는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오염사고', '서서히 발생한 오염'과 별도로 각종의 환경배상 책임보험으로 담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제 3자의 신체장해, 재물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지하저장탱크에서의 누출, 유출에 기인하는 제 3자의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Underground Storage Tanks Cover, 환경 컨설턴트 등의 직업배상 책임보험,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청부배상 책임보험 등이 있다.

사. 일본

일본에서 환경오염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종래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만을 통상의 제 3자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담보하였으나, 1992년에 '서서히 발생한 오염에 의한 배상책임'도 담보하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이 새로이 개발되었다.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물, 대기, 토양의 오염에 기인하는 ① 제 3자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② 제 3자의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 ③ 어업권, 입어권 침해 ④ 법령(공해방지 사업비 사업자 부담법)에 의한 오염 정화비용(자기소유 토지의 정화비용 제외) ⑤ 손해방지 경감비용 ⑥ 구상권 보전비용 ⑦ 쟁송(爭訟)비용 등이다.

제 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통상의 사업활동에 따른 배수·배기에 따른 오염 즉, 소위 공해 리스크에 대하여서도 담보된다. 다만 일본에서의 배상



책임의 책임원리는 일반적으로는 과실책임이지만, 대기 및 물에 관하여 각각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엄격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3. 맺는 말

환경오염에 의한 제 3자 배상책임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일반법으로 취급되지만, 독일과 같이 환경배상책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엄격책임이 도입된 경우도 있다. 이런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도 종래에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이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환경배상 책임보험을 통하여 담보하는 경향이다.

한편,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의 정화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

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만, 독일이 유사한 법률을 연방차원으로 도입할 전망이어서 금후의 동향이 주목된다.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토지의 정화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수 이전에 발생하여 있는 과거의 오염을 담보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미국 등과 같이 인수 이후에 발생하는 정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리스크는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한편, 유감스럽게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스크 이상으로 그의 방지, 경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